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5. 21
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9. 5. 21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황동연

### 가. 개정이유

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재산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, 우리 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 개정 내용

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3조제2항)

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% 감면을 100% 면제로 확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: 명금길)

○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상인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목적 으로 재산세 감면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임

< 개정된 주요내용>

- (1) 안 제13조제2항에서 “2007년 1월 1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”를 “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”로 하였음
- (2) 안 제13조제1항 및 2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 또는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음

[검토의견]

○ 동 개정조례안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% 감면을 100%로 면제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「지방세법」 제3조제7조,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